

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규정

제정 1989. 11. 2

개정 1992. 8. 10

개정 2013. 10. 0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3.10.02.)
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인문·자연과학에 관한 연구
2.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구 등의 제반 교류와 연계 활동에 관한 사업
3. 연구자료 및 전문도서의 수집과 그 확장에 관한 사업.
4.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각종 계획·연구·조사·강연·강습·발표회 개최 및 연구지 발간 등에 관한 사업.
5.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부대사업. (개정2013.10.02.)

제3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소장·간사와 기획실, 정치·경제·문화연구부, 사회개발연구부,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부, 도서개발연구부, 교육개발연구부 및 교통·환경평가 연구부를 둔다.

② 소장은 이 대학교 재직중인 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(所務)를 지휘·관장한다. (개정2013.10.02.)

③ 실장 및 부장은 이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, 실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무(所務)를 기획·관리하고, 부장은 소관 전문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지휘·관장한다. (개정2013.10.02.)

④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은 소장이 임명하며,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연구사업에 종사토록 한다.

⑤ 소장·실장 및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⑥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직인의 관수, 문서수발 및 회계 등 연구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3조의 2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객원연구원, 특별연구원,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 (신설2013.10.02.)

② 각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(신설2013.10.02.)

제4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연구소에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고 소장외에 5인 내지 7인의 운영위원을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(개정2013.10.02)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,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2.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실장 및 부장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의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5. 연구결과 평가 및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(2013.10.02.)

제6조(연구사업보고) 연구소장은 매학기 초에 연구소의 연구계획(예산서 첨부)과 전학기의 연구실적(결산서 첨부)을 총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계획이 연간일 때는 학기말에 진행사항만 보고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발표) 연구소장은 매학기말 연구실적을 발표하여야 한다. 단, 연구계획이 연간계획일 때는 매 학년말에 발표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경비는 대학지원금,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경비로 충당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연구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(1989. 11. 02.)

이 규정은 198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2. 08. 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0. 0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